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1760     |
| 의 퇴 인 | 김동아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07.26. |
| 추계번호  | 24A2041     |

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중 지류상품권을 10% 할인해서 발행하고,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가맹점에 지원할 경우,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7억 5,000만원, 2030년 247억 5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37억 5,000만원 (연평균 247억 5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 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지류상품권 10% 할인 발행<br>(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)          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50   | 750     | 150   |
| 충전식체크카드 상품권<br>사용시 카드수수료 지원<br>(안 제26조의7제3항 신설) | 97.5  | 97.5  | 97.5  | 97.5  | 97.5  | 487.5   | 97.5  |
| 추가재정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7.5 | 247.5 | 247.5 | 247.5 | 247.5 | 1,237.5 | 247.5 |

주. 향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및 발행·운영수수료율,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6조의7<br>(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<u>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음</u>. 이 경우 <u>온누리상품권의 할인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</u>(제2항 신설)</li> <li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<u>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</u>(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말한다)를 대통</li> </ul> | 재량규정 |

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 |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가맹점에 지원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</u> |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<br>(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) | ○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※ [참고자료 1] 온누리상품권 사업 개요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: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(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)

가. 지류상품권 10% 할인 발행(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)

- 본 추계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중 현재 5% 할인상품권만 발행되고 있는 지류상품권<sup>1)</sup>을 5% 할인 및 10% 할인상품권을 병행해서 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<sup>2)</sup>

○ (현행) 5% 할인 지류상품권 → (개정안) 5% 및 10% 할인 지류상품권

1) 현재 온누리상품권 중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체크카드는 5% 또는 10% 할인해서 발행되고 있음

2)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10% 할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

- 추계 방법은 지류상품권을 5% 할인 및 10% 할인을 병행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 후, 지류상품권 발행금액에 발행·운영수수료율<sup>3)</sup>을 곱하여 산출한 값에서 현행 예산에 편성된 5% 할인 지류상품권만 발행하는 경우의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
  - 비할인판매 지류상품권은 법인 및 기관 등에게만 판매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현행 6,000억원<sup>4)</sup> 규모인 5% 할인 지류상품권 발행 비용은 2024년도 예산인 468억원으로 가정한 후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 - 2024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원의 온누리상품권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, 향후 5년간 현행 5조원 발행 규모를 유지할 계획임. 따라서 추계기간 동안의 지류상품권 발행금액도 현행 6,00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- (지류상품권 발행금액) 5% 할인 및 10% 할인 지류상품권을 각각 연간 3,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시장경영혁신지원(4154-304) 세부사업(온누리상품권 발행) 편성 내역(2024년도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온누리상품권 발행: 351,348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▶ (비할인판매, 지류) 0.8조원 x 발행·운영수수료 2.8% = 22,40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|
| ▶ <b>(5% 할인판매, 지류) 0.6조원 x (발행·운영수수료 2.8% + 할인율 5%) = 46,800백만원</b> |
| ▶ (5% 할인판매, 카드) 1.7조원 x [할인보전금(5%)+발행·판매·회수수료(0.42%)]= 92,140 백만원   |
| ▶ (5% 할인판매, 모바일) 0.5조원 x [할인보전금(5%)+발행·판매·회수수료(1.0%)]= 30,000 백만원   |
| ▶ (10% 할인판매, 카드) 0.9조원 x [할인보전금(10%)+발행·판매·회수수료(0.42%)]= 93,780백만원  |
| ▶ (10% 할인판매, 모바일) 0.5조원 x [할인보전금(10%)+발행·판매·회수수료(1.0%)]=55,000백만원   |
| ▶ (기타운영비) 11,228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.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에서 발췌

- (지류상품권 발행·운영수수료율) 발행·운영수수료 2.8% 및 할인보전금 (발행금액의 5~10%)
  - 발행·운영수수료율은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 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류, 모바일, 충전식 체크카드의 충전 방식에 따라 발행금액의 10% 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

3) 발행·운영수수료 + 상품권 할인율

4) [표 2]의 5%할인 지류상품권 발행금액 6,000억원 참조

[표 3]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 비용(직접비)

|              | 지류(5%)     | 모바일(10%)  | 충전카드(10%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할인율(할인보전금)   | 발행금액의 0~5% | 발행금액의 10% | 발행금액의 10% |
| 발행·판매·회수 수수료 | 2.80%      | 1.00%     | 0.42%     |

주: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(제도운영을 위한 홍보비·시스템운영비 등)을 제외한 금액임  
 자료: 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□ 온누리상품권 중 지류상품권을 10%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750억원(연평균 150억원)으로 추계

○ 5% 할인 지류상품권 발행 비용

→ 3,000억원×(발행·운영수수료 2.8% + 할인율 5%) = 234억원

○ 10% 할인 지류상품권 발행 비용

→ 3,000억원×(발행·운영수수료 2.8% + 할인율 10%) = 384억원

[표 5] 온누리상품권 중 지류상품권을 10% 할인 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 2029년 | 2030년 | 합계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5% 할인 지류상품권 발행 비용 (A)       | 234   | 234   | 234   | 234   | 234   | 1,170      |
| 10% 할인 지류상품권 발행 비용 (B)      | 384   | 384   | 384   | 384   | 384   | 1,920      |
| 합 계(C=A+B)                  | 618   | 618   | 618   | 618   | 618   | 3,090      |
| 5% 할인 지류상품권만 발행하는 경우의 비용(D) | 468   | 468   | 468   | 468   | 468   | 2,340      |
| 추가재정소요(E=C-D)            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50   | <b>750</b> |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충전식체크카드 상품권 사용시 카드수수료 지원(안 제26조의7제3항 신설)

- 본 추계에서는 중소기업부에서 충전식 체크카드<sup>5)</sup> 형태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지원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<sup>6)</sup>
  - 추계 방법은 연간 발행되는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전액 사용된다고 가정한 후,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 발행금액에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(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 발행금액) 2024년도 예산 기준 2조 6,000억원<sup>7)</sup>이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발행되는 것으로 가정
  - 1.7조원(5% 할인판매) + 0.9조원(10% 할인판매) = 2조 6,000억원
- (가맹점 카드수수료율) 신용카드 0.5%, 직불카드 0.25%로 가정
  -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 발행금액 2조 6,000억원 중 1/2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, 나머지 1/2은 직불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<sup>8)</sup>
  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전통시장 등의 상인<sup>9)</sup>의 연간 매출액은 3억원 이하일 것으로 가정하여 영세 중소기업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
  - 가맹점에 지원해주는 카드수수료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5) 온누리상품권 앱에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등록 후 선할인해서 충전하는 형식

6)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제로페이 형식이므로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, 충전식체크카드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결제시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

7) [표 2]의 5%할인 및 10% 할인 카드 참조

8) 향후 온누리상품권 구매자가 충전식 체크카드에 카드 등록시,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등록 비율을 현지점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함

9)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와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활성화구역, 골목형상점가,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함

[표 6]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(2023년 기준)<sup>10)</sup>

(단위: %)

| 연간 매출액          | 신용카드 | 직불카드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3억원 이하          | 0.5  | 0.25 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 | 1.10 | 0.85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| 1.25 | 1.00 |
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1.50 | 1.25 |

자료: 여신전문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487억 5,000만원(연평균 97억 5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7]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년  | 2027년  | 2028년  | 2029년  | 2030년  | 합계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신용카드          |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 발행금액 (A, 억원) | 13,000 | 13,000 | 13,000 | 13,000 | 13,000 | 65,000 |
|               | 카드 수수료율 (B, %)            | 0.5    | 0.5    | 0.5    | 0.5    | 0.5    | —      |
|               | 합 계 (C=A×B, 억원)           | 65     | 65     | 65     | 65     | 65     | 325    |
| 체크카드          |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 발행금액 (D, 억원) | 13,000 | 13,000 | 13,000 | 13,000 | 13,000 | 65,000 |
|               | 카드 수수료율 (E, %)            | 0.25   | 0.25   | 0.25   | 0.25   | 0.25   | —      |
|               | 합 계 (F=D×E, 억원)           | 32.5   | 32.5   | 32.5   | 32.5   | 32.5   | 162.5  |
| 추가재정소요(G=C+F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7.5   | 97.5   | 97.5   | 97.5   | 97.5   | 487.5  |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0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의6제1항에 따른 법정 우대수수료를 적용

- 추계 결과,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중 지류상품권을 10% 할인해서 발행하고,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가맹점에 지원할 경우,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7억 5,000만원, 2030년 247억 5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37억 5,000만원(연평균 247억 5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 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지류상품권 10% 할인 발행<br>(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)          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50   | 150   | 750     | 150   |
| 충전식체크카드 상품권<br>사용시 카드수수료 지원<br>(안 제26조의7제3항 신설) | 97.5  | 97.5  | 97.5  | 97.5  | 97.5  | 487.5   | 97.5  |
| 추가재정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7.5 | 247.5 | 247.5 | 247.5 | 247.5 | 1,237.5 | 247.5 |

주. 향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및 발행·운영수수료율,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
## 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 V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추계세제총괄과 | 지수현 | 권아영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|
| 지수현 | 02-6788-3735 | zisu37@nabo.go.kr |

## [참고자료 1] 온누리상품권 사업 개요

(자료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### □ 상품권 개요

- (사업목적) 전국 전통시장·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 (2009년~현재)
  - \* 근거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(온누리상품권의 발행)
- (발행목표) 2024년: 5.0조원 발행 (본예산 351,348백만원)
- (발행권종) 지류상품권(5천원·1만원),  
충전식체크카드·모바일상품권(5천원·1만원·3만원·5만원·10만원)
- (판매기관) (지류) 16개 금융기관, (모바일·카드) 전용 앱 내 충전
- 가맹점 현황
  - (사용처) 「전통시장법」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활성화구역, 골목형상점가,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
    - \* 2020.8.12일부터 「전통시장법」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상인도 가맹 허용
  - (등록현황) 지류상품권 19.4만 곳, 모바일상품권 9.6만 곳, 충전식 카드형 가맹점 10만 곳
    - \*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활성화구역, 골목형상점가(2020.8월),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자율상권구역(2022.4월)